

# 저(著)력저작권법

## 제3판 1쇄 정오표

(2026년 03월 09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6년 02월 10일 발행된 “저(著)력저작권법”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著)력저작권법 제3판(2026년) 1쇄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6년 03월 09일 기준)**

2026년 02월 10일 발행된 저(著)력저작권법(제3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수정사항
p. 25	<p>[제목 - 수정]</p> <p><b>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b></p>
p. 37	<p>[본문 - 판례번호 위치 변경]</p> <p>다. 고등학교의 시험문제</p> <p>“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2005가합73377, “죽보닷컴” 사건)</p>
p. 49	<p>[각주 - 수정]</p> <p>“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은 인쇄되어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였고,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이 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50	<p>[본문 - 수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12조 제1항(성명표시권)</b></p> <p>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 </div>
p. 50	<p>[본문 - 수정]</p> <p><b>3. 내용</b> <small>기출 56, 59회</small></p> <p>가. 표시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12조 제2항 본문</b></p> <p>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p> </div> <p>나. 제한</p> <p>(1) 제한사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12조 제2항 단서</b></p> <p>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p. 58	<p>[제목 - 수정]</p> <p>가. 노래방 운영이 공연한 행위인지(적극)</p>
p. 71	<p>[본문 - 수정]</p> <p><b>II.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b></p> <p>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p. 119	<p>[본문 - 수정]</p> <p><b>III. 출판권자의 권리와 의무</b></p> <p><b>1. 권리</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63조 제2항(출판권자의 권리)</b></p> <p>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p> </div>
p. 142	<p>[본문 - 수정]</p> <p><b>3. 형사상 조치</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136조 제2항 제3의2호(벌칙)</b></p> <p>② 제103조의3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b>제137조 제1항 제6호(벌칙)</b></p> <p>①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게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div>
p. 143	<p>[논점박스 - 수정]</p> <p>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성립(判例)</p> <p>“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003나21140, “소리바다” 사건)</p>

<p>p. 145</p>	<p>[본문 - 수정]</p> <p>4. 관련 判例</p> <p><b>사안포섭</b></p> <p>1. P2P로 MP3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지(적극)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005도872)</p> <p>2.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는지(소극)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의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5도872)</p> <p>3.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전송'에 해당하는지(적극)          “또한,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이 사건 각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 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다운로드 폴더는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소리바다 서비스에의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이용자들은 이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소리바다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06라1245)</p>
<p>p. 146</p>	<p>[본문 - 수정]</p> <p><b>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b></p> <p>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p. 150</p>	<p>[본문 - 수정]</p> <p><b>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b></p> <p>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p>

p. 150	<p>[본문 - 수정]</p> <p>4. 형사상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36조 제2항 제3의5호(벌칙)</p> <p>② 제104조의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137조 제1항 제3의2호(벌칙)</p> <p>① 제104조의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div>
p. 150	<p>[본문 - 수정]</p> <p>3. 형사상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36조 제2항 제3의6호(벌칙)</p> <p>②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div>
p. 151	<p>[본문 - 수정]</p> <p>3. 형사상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37조 제1항 제3의3호(벌칙)</p> <p>①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div>
p. 152	<p>[본문 - 수정]</p> <p>2. 형사상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36조 제2항 제3의7호(벌칙)</p> <p>②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div>

<p>p. 156</p>	<p>[본문 - 수정]</p> <p><b>5. 정보제공명령 및 비밀유지명령</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b>제129조의2 제1항(정보제공명령)</b></p> <p>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b>제129조의3 제1항(비밀유지명령)</b></p> <p>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대리인,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div>
<p>p. 157</p>	<p>[본문 - 수정]</p> <p><b>7. 공동저작물 침해 구제</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b>+α</b></p> <p>▶ <b>공동저작물의 저작권격권 침해 시 1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부(적극)</b></p> <p>“저작권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권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권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98다41216)</p> </div>
<p>p. 157</p>	<p>[본문 - 수정]</p> <p><b>나. 양벌규정</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b>+α</b></p> <p>▶ <b>법적 자문을 구한 경우, 비침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소극)(判例)</b></p> <p>“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1도3599, “다이제스트” 사건)</p> </div>

p. 165

[본문 - 수정]

#### IV. 그 외 효과

##### 1. 실질적 보호기간의 연장

###### 제40조 제2항 제2호

②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 후 70년 동안 보호되나, 저작자가 실명 등록을 하는 경우 사망 후 70년(사후 기산주의)으로 전환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